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농림부 공고 제 2005-99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2일

농림부장관

1.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며, HACCP 지정업무를 전담할 민간조직을 신설하고,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 하며, 도축장에 도축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수입축산물판매업 신고기관을 시·군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며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축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개선(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 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도축·가공·유통 단계에 HACCP을 도입하여 위생 관리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육단계에는 HACCP이 미도입 되었고, 현행 검역원의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HACCP 지정 업무 처리가 불가하며, HACCP 지정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난립될 우려가 있는 HACCP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영업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도축장 HACCP 운용 수준이 도축장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② HACCP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축사육단계에 HACCP을 도입하고, HACCP 지정업무를 전담할 민간조직을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동 조직이 HACCP컨설팅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임.
- ③ HACCP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완벽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 및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됨.

나.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① 축산물(닭·오리고기 등)이 비포장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재오염 및 수입산과의 구별이 곤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② 재오염을 방지하고, 수입산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포장하여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 ③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 확보가 기대됨.

다. 도축검사의 내실화 및 효율화(안 제12조의2, 안 제13조의2 신설)

- ① 식육에 동물약품 잔류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잔류위반농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일부농가들의 경우 출하 시 휴약기간 미준수 등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규제검사를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축을 출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축을 출하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출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현재 전국 도축장에 도축검사관·검사보조원 등을 배치하여 생체검사·해체검사 실시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관이 도축장당 1.14명에 불과하여 좀더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도축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것임.
- ② 규제검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축을 출하하는 것을 금지하며, 도축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축검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③ 규제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축장에 도축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축검사가 기대됨.

라. 검사에 대한 이익제기 제도 도입(안 제12조의3 신설)

- 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당해 영업자가 검사 결과를 의심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②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판정을 하기 전에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이익제기 및 재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③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위생검사 제도 개선(안 제19조제4항·5항 신설)

- ① 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업소 간 검사회수의 불균형 및 관계부처 간 중복검사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② 정기 출입검사 주기를 설정하여 정기검사는 관계부처 합동 또는 관계부처 간 상호 중복이 없도록 하고, 위법사항 시정조치 점검, 신고·제보, 위해정보 입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업소가 6월 이내에 유사목적으로 2회 이상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생과 관련하여 2개 이상 부처의 검사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소관 기관에 합동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③ 식품관련 업소에 대하여 과도한 위생검사를 보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업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안 제21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제47조)

- ① 행정처분으로 허가가 취소된 자 등 축산물 위해사범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은 검역원에서, 판매업 신고 등은 시장·군수에게 하는 등 이원화되어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②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며, 품목제조신고 의무 위반자 및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 미이행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자 및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려는 것임.

③ 위해축산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및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가 기대됨.

사. 위해축산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 ① 환경오염 및 새로운 축산물의 출현 등으로 축산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② 농림부장관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③ 위해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002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02-500-1917~8)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 또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 - 농림법령 - 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C